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4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이광희 · 김동아 · 이용선
박지원 · 윤건영 · 김문수
양부남 · 채현일 · 김 윤
이주희 · 김우영 · 양문석
문진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및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조정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를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을 “환경개선, 주민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⑱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의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생 략)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u>협의하여</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 ----- ----- ----- ----- ----- <u>협의·조정을 거쳐</u> ----- ----- ----- -----.
<u><신 설></u>	③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생 략) ② 반입협력금은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u>환경개선과 주민 지원</u> 2. ~ 4. (생 략)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⑰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u>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 ③ ----- -----. 1. ----- -<u>환경개선, 주민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u>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⑰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⑱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의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